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추경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946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	---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윤재옥의원안, 김영진 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형동의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엄태영의원안, 서영교 의원안, 최기상의의원안, 정부안)	2
2.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정부안 등)	9
3.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 연장 (추경호의원안, 윤준병의원안)	14
4.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이종욱의원안, 엄태영 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형동의의원안, 추경호의원안)	19

I. 개요

1. 추경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94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추경호의원 등 19인
- (2) 제 안 일 : 2025. 8. 1.
- (3) 회 부 일 : 2025. 8.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및 청년도약계좌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특례,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특례들은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청년층의 주거·결혼·노후 대비 등 생애주기별 자산축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여 청년층의 안정적인 자산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2항·제3항, 제91조의20 및 제91조의22).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윤재옥 의원안, 김영진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형동의원안, 추경호 의원안, 엄태영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최기상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정안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87조제2항) ○ 적용대상: 근로소득자로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공제액: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 ○ 중도해지 시 감면세액 미추징 사유 - 저축자의 사망 - <u>해외이주</u> ○ 적용기한: <u>2025년 12월 31일까지</u>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 적용대상: (현행과 같음) ○ 공제액: (현행과 같음) ○ 중도해지 시 감면세액 미추징 사유 - 저축자의 사망 - 「<u>해외이주법</u>」에 따른 해외이주(정부안) ○ 적용기한: <u>2027년 12월 31일까지 (김영진의원안, 서영교의원안)</u> <u>2028년 12월 31일까지 (윤재옥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엄태영의원안, 정부안)</u> <u>2029년 12월 31일까지 (김형동의원안)</u> <u>2030년 12월 31일까지 (윤준병의원안, 최기상의원안)</u>

* 윤재옥의원안 2025. 2. 27. 발의(의안번호 8417), 김영진의원안 2025. 2. 27. 발의(의안번호 8520), 윤준병의원안 2025. 3. 20. 발의(의안번호 9180), 김형동의원안 2025. 7. 24. 발의(의안번호 11691), 추경호의원안 2025. 8. 1. 발의(의안번호 11946), 엄태영의원안 2025. 8. 13. 발의(의안번호 12147), 서영교의원안 2025. 9. 9. 발의(의안번호 12819), 최기상의원안 2025. 10. 28. 발의(의안번호 13767),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 9건의 개정안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서민·중산층의 주택마련을 위한 세제지원을 계속하려는 것으로,

김영진의원안 및 서영교의원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2년간), 윤재옥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엄태영의원안 및 정부안은 2028년 12월 31일까지(3년간), 김형동의원안은 2029년 12월 31일까지(4년간), 윤준병의원안, 최기상의원안은 2030년 12월 31일까지(5년간) 각각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는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서민·중산층의 주택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자가보유율은 하락추세에 있는 반면, 중위 가구의 자가보유율은 소폭 증가 추세이며 상위가구의 자가보유율은 증가추세에 있다가 최근 감소세에 있음.

[소득별 자가점유율]

(단위: %)

연도	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2년	2023년
전체	58.0	59.9	61.1	61.1	61.2	60.6	61.3	60.7
하위 (1~4분위)	50.0	48.5	49.3	48.8	48.2	46.9	47.8	47.3
중위 (5~8분위)	56.4	62.2	63.8	63.6	62.9	64.5	65.5	64.0
상위 (9~10분위)	77.7	79.3	79.9	81.5	81.9	80.2	80.5	78.3

주: 소득분위는 「2023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조사된 가구소득 10분위수를 기준으로 구분
자료: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 - 요약보고서, 2024. 12, p.46

또한, 동 조사에 따르면 2023년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은 중위수 기준 6.3배로 2006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전반적으로 주택구입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이 높아져(소득 하위가구 8.7배, 중위가구 6.3배, 상위가구 5.7배) 소득이 낮을수록 주택마련에 더욱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소득별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단위: 배)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	중위수	5.6	5.6	5.5	5.4	5.5	6.7	6.3	6.3
	평균	6.3	6.4	6.7	6.8	7.3	8.9	9.1	8.1
하위	중위수	9.8	8.3	9.0	6.8	8.0	9.4	10.0	8.7
	평균	11.6	11.1	12.0	9.0	9.6	14.1	14.9	13.2
중위	중위수	5.6	5.2	5.2	5.5	6.0	6.3	6.3	6.3
	평균	6.2	6.2	6.4	6.2	6.8	8.4	8.6	7.7
상위	중위수	5.0	4.8	4.8	3.6	3.9	7.1	6.4	5.7
	평균	5.0	5.3	5.7	4.3	4.5	8.1	7.9	7.2

자료: 국토교통부,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요약보고서-”, 2024. 12, p. 51.

둘째, 2023년 귀속소득 기준 전체 연말정산신고 근로소득자 2085.2만명의 4.99%에 해당하는 104만명 가량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주택마련저축¹⁾ 소득공제를 적용받았고 동 소득공제 적용 규모가 증가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될 경우 상당 수의 근로소득자들이 사실

1) 국세통계연보상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하게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을 합산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기준으로 하였음.

상의 증세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연도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비율]

(단위: 명, %, 백만원, 만원)

구 분	연말정산신고 근로소득자(A)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 근로소득자(B)	적용비율 (B/A)	공제 소득
2021년	19,959,148	1,037,378	5.2	459,601
2022년	20,534,714	1,063,010	5.18	442,728
2023년	20,852,234	1,039,888	4.99	409,116

자료: 각 년도 국세통계연보, 4-2-4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IV

□ 다만, 다음의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효과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025년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에 따르면²⁾, ① 개인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주택청약저축의 가치는 4,637만원인데, 그 중 대부분인 4,250만원은 주택청약을 통해 얻게 되는 자본이익에서 도출된 반면, 소득공제의 가치는 전체 주택청약저축의 가치 중 3%만을 차지하고 있어 소득공제가 주택청약저축의 가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② 소득공제 제도가 없어질 경우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가입자의 비율도 3.84%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③ 1인당 경감세액이 37,997원 수준으로 크지 않아 소득공제의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주택 마련에 실질적인 효과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

2)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2025.9. 기획재정부

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주택청약종합저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인 수단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총급여구간별 경감세액]

(단위: 명, 억원, 원)

귀속 연도	총급여 구간	공제인원	공제금액	1인당 소득공제금액	경감세액	1인당 경감세액
2023	1천만원 이하	5,145	10.32	200,538	0.62	12,032
	4천만원 이하	418,384	1,483.72	354,632	103.80	24,809
	7천만원 이하	554,942	2,352.35	23,891	248.73	44,821
	전체	97,8471	3,846	393,102	372	37,997

자료: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2025.9. 기획재정부

둘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약 20년 이상 장기간 운영되어 왔으나 세대 및 인구구조 변화와 같은 현재 및 미래의 정책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³⁾.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부양가족 및 부양자녀가 없는 수혜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⁴⁾, 최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⁵⁾, 세대 간 주거 소비 특성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단순히 적용

3)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2025.9. 기획재정부

4) 부양가족이 있는 수혜자는 2013년 52%에서 2023년 26%로 감소하였고, 부양자녀가 있는 수혜자는 2013년 28%에서 2023년 6%로 감소함.

5) 2021.12. 기준 26,772,724계좌에서 2025.9. 기준 25,115,926계좌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기간을 연장하기보다는 정책환경의 변화에 상응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적용기한의 연장 범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기한을 길게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을 위하여 적용기한을 짧게 설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겠음.

□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과 같이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경우, 연 평균 412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됨.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세수추계 결과(2027~2030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윤재옥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엄태영의원안	-412	-412	-412		-1,237	-412
김영진의원안	-412	-412			-825	-412
김형동의원안	-412	-412	-412	-412	-1,650	-412

또한, 기획재정부는 정부제출안에 따를 경우, 2027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총 1422억원(연평균 474억 원)⁶⁾의 소득세수가 감소할 것으

6)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항목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항목의 추계액을 합산한 금액임.

로 추계하고 있음.

[정부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세수추계 결과(2027~2029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정부안	△474	△474	△474	△1,422	△474

문 의 처

02)6788-5149

2.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정부안 등)

현 행	개정안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제87조제3항) - 가입대상 : 무주택세대주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3천6백만원(종합소득금액 2천4백만원) 이하인 청년 - 의무가입기간 : 2년 - 특례내용 :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연 납입금액 600만원 한도) - 적용기한 : <u>2025년 12월 31일</u>	☐ 적용기한 연장 - 가입대상 : (현행과 같음) - 의무가입기간 : (현행과 같음) - 특례내용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u>2027년 12월 31일: 김영진·서영교 의원안</u> - <u>2028년 12월 31일: 윤재옥·엄태영·추경호의원안, 정부안</u> - <u>2029년 12월 31일: 김형동의원안</u> - <u>2030년 12월 31일: 윤준병의원안</u>

* 윤재옥의원안 2025. 2. 25. 발의(의안번호 8417), 김영진의원안 2025. 2. 27. 발의(의안번호 8520) 엄태영의원안 2025. 3. 17. 발의(의안번호 9010), 윤준병의원안 2025. 3. 20. 발의(의안번호 9180) 김형동의원안 2025. 7. 24. 발의(의안번호 11691), 추경호의원안 2025. 8. 1. 발의(의안번호 11946)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서영교의원안 2025. 9. 9. 발의(의안번호 12819)

☐ 개정안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2년 연장하는 안(김영진·서영교의원안), 3년 연장하는 안(윤재옥·엄태영·추경호의원안, 정부안), 4년 연장하는 안(김형동의원안), 5년 연장하는 안(윤준병의원안)이 제시되었음.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산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써,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달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연령⁷⁾(만 19세~34세), 소득⁸⁾(근로소득자 총급여액 3,600만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입이 허용되고,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5백만원까지 비과세(연 납입금액 600만원 한도)를 적용받게 됨.

동 저축상품은 2025년 8월 가입자 기준 148만 6천명, 납입액 기준 8조원 규모로 가입자수와 납입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⑭ 법 제87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8)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이 조에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한다.

1. 가입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가입대상으로 할 것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2.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 및 납입액 현황]

(단위: 천좌,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8.
가입자 수	397	514	571	610	1,299	1,486
납입액	13,776	20,626	26,708	31,923	66,638	80,021

※ '24.2월부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개편

정부가 제출한 각 연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2021년 2천만원에서 2024년에는 3억원으로 증가하였고, 2025년도 이후 6억원 수준의 조세지출이 전망되고 있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조세지출 실적]

(단위: 억원)

연도	2021(실적)	2022(실적)	2023(실적)	2024(실적)	2025(전망)	2026(전망)
감면액	0.2	0.5	2	3	6	6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첫째, 청년 세대의 열악한 주거 여건을 감안할 때 무주택 저소득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3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가구 중 자기가 소유한 주택에 살고 있는 자가점유율은 14.6%로, 전체 조사대상 가구⁹⁾(57.4%) 대비 저조한 상황으로,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비율(81.1%)이 높고 비아파트에 거

9) 국토교통부에서 수행하는 주거실태조사의 전체 표본가구(2023년 기준 6.1만가구)를 의미함

주하고 있는 가구비율¹⁰⁾도 타 특성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가구 유형별 자가점유율 비교]

구 분	일반		청년		신혼		고령	
	'22	'23	'22	'23	'22	'23	'22	'23
자가점유율(%)	57.5	57.4	13.2	14.6	43.6	46.4	75.0	75.7

주: 자가점유율은 자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
 자료: 「2023년도 특성가구 주거실태조사」, 국토교통부, 2024. 12.

둘째,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는 소비성향이 높은 청년들로 하여금 저축 유인을 강화하여 저소득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고, 15.4%의 이자소득까지 비과세되어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저축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따른 비과세 혜택만으로는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내 집 마련을 통한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비교하여 비과세 및 우대금리 혜택을 추가하여 재산형성 기능을 강화하였을 뿐,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청약 순위나 가점 등 주택청약권 자체에 특별한 우대는 제공하지 않기 때문임

10) 비아파트 거주 비율: 일반 47.6%, 청년 68.4%, 신혼 26.1%, 고령 54.6%

문 의 처
02)6788-5161

3.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 연장(추경호의원안, 윤준병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제91조의20) ○ 가입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직전년도 총급여 5,000만원(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 요건 : - 40% 이상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 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 - 1인당 납입액이 연 600만원 이하 ○ 특례내용 : -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 적용기한 : <u>2025년 12월 31일</u>	☐ 적용기한 연장 등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특례내용 :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 <u>2028년 12월 31일(추경호의원안)</u> - <u>2030년 12월 31일(윤준병의원안)</u>

* 윤준병의원안 2025. 3. 21. 발의(의안번호 9216), 추경호의원안 2025. 8. 1. 발의(의안번호 11946)

☐ 두 개정안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3년 연장하는 추경호의원안과 5년 연장하는 윤준병의원안이 제시되었음.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하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¹¹⁾

1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제1호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제2호에 따른 저축(이하 이 조에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각 과세

제도는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의 청년(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만기 3년 이상 5년 이하의 청년형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사람에 대해 그 납입금액(6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하는 제도임.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개요]

구 분		청년형 장기펀드
가입자격	연령요건	만 19세 ~ 만 34세
	소득요건	직전 연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운용	투자자산	40%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
	의무가입기간	3년 ~ 5년
혜택	소득공제	납입액의 40% 공제 (연 600만원 한도)

동 제도는 청년의 중장기투자 유도를 목적으로 2021년 말 세법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나, 실제 상품 출시일이 상품 판매시스템 개발 지연 등으로 인해 2023년 1분기로 늦어짐에 따라 청년들이 청년형 장기펀드의 출시를 인지하고 가입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정책의 효과성 분석에 한계가 있었음을 고려하여 2023년, 2024년 세법개정을 통해 1년씩 두 차례 연장되었음.

동 저축의 가입자 수는 2025년 6월 기준 1만 3천명, 납입액은 395억원 수준임.

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현황]

(누적, 천명, 억원)

구분	2023	2024	2025. 6.
가입자 수	8	11	13
납입액	111	298	395

자료: 금융위원회

정부가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24년도 실적은 13억원으로, 2025년도와 2026년도에는 각각 26억원, 27억원 수준의 조세지출이 전망되고 있음.

[연도별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22년	2023년 (실적)	2024년 (실적)	2025년 (전망)	2026년 (전망)
금액	0	10	13	26	27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청년의 경우 낮은 소득수준과 취업소요기간 등으로 인해 자산형성이 어려운 바, 사회 출발 시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이 필요함.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청년 세대의 경우 취업난으로 인하여 학교 졸업 후 첫 취업까지 평균 11.5개월이 소요되며, 초봉이 월 2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전체 중 59.8%로 나타나는 등¹²⁾ 자산

12) 통계청,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2024. 7.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들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둘째, 펀드 납입액에 대한 세제상 혜택의 제공은 계속된 저금리 및 인플레이션 등으로 예금을 통한 자산형성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수익률 추구 성향이 높은 청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 경우 동 특례제도는 일정 소득 이하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

□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동 과세특례는 일정 소득(총급여 5,000만원,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 제도로 설계되어 과세미달자에게는 혜택이 없고 소득세율이 낮은 저소득 청년들에게는 세제혜택 효과가 크지 않은 측면이 있음.

연 납입한도(600만원)를 모두 납입한 경우에도 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의 청년은 39만 6천원¹³⁾이 절세되는 효과가 있으나,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의 청년은 15만 8천원¹⁴⁾의 절세효과가 있음.

둘째, 동 과세특례는 최소 3년 동안 가입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¹⁵⁾ 이는 확정적 이자를 보장하는 저축상품과는 달리 적기에 수

13) 600만원×40%(공제율)×16.5%(지방세를 포함한 세율)=396,000

14) 600만원×40%(공제율)×6.6%(지방세를 포함한 세율)=158,400

15)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⑤ 저축취급기관은 가입자가 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정세액”이라 한다)을 추정하여 저축 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익을 실현할 기회를 제한할 수 있고, 혼인·출산 등으로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유동성 제약 요인이 되어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음.

셋째, 청년층의 경우 펀드 방식의 간접투자보다 직접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동 제도의 활성화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어 보임.

국내 증권사에서 실시한 선호도 조사¹⁶⁾에 따르면, 청년세대의 경우 MZ세대가 경험해 본 금융상품은 예적금·청약(84.6%), 주식(직접투자) 63.5%, 보험(연금 포함) 44.3%, 가상자산 30.8%, 펀드(간접투자) 28.4% 순으로 나타남.

- 위와 같은 사유로 동 펀드의 펀드 납입액 및 가입자 수가 저조¹⁷⁾한 점,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은 중복 가입 가능한 ‘서민형 ISA’,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을 통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는 동 제도의 존속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61

당하는 경우에는 추정하지 아니하며,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정한다.

16) 우리금융경영연구소, MZ세대의 금융플랫폼 이용행태 분석, 2022.12.26.

- MZ세대가 경험해 본 금융상품은 예적금·청약(84.6%), 주식(직접투자) 63.5%, 보험(연금 포함) 44.3%, 가상자산 30.8%, 펀드(간접투자) 28.4% 순으로 조사됨

17) '25.5월(누적) 기준 10,799명 가입, 납입액 348억원

4.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

(이종욱의원안, 엄태영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형동의원안, 추경호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청년도약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안 제91조의22) ○ 가입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총급여액 7,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 청년 ○ 요건 -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 - 납입한도가 연 840만원 이하일 것 - 다음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 예금·적금·예탁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융상품,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국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 특례내용 -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 적용기한(가입일 기준) - <u>2025년 12월 31일</u>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가입일 기준) - <u>2027년 12월 31일(이종욱의원안)</u> - <u>2028년 12월 31일(엄태영·추경호의원안)</u> - <u>2029년 12월 31일(김형동의원안)</u> - <u>2030년 12월 31일(윤준병의원안)</u>

* 이종욱의원안 2024. 12. 27. 발의(의안번호 7017), 엄태영의원안 2025. 3. 20. 발의(의안번호 9198), 윤준병의원안 2025. 3. 21. 발의(의안번호 9216), 김형동 2025. 7. 28. 발의(의안번호 11779) 추경호의원안 2025. 8. 1. 발의(의안번호 11946)

□ 개정안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는 안(이종욱의원안), 3년 연장하는 안(엄태영·추경호의원안), 4년 연장하는 안(김형동의의원안), 5년 연장하는 안(윤준병의원안)이 제시되었음.

□ 청년도약계좌는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생활·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기여금을 일정 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비과세함으로써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세법개정 시 신설됨.

청년층¹⁸⁾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 중이던 정책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¹⁹⁾”의 가입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면서 이를 대체하는 “청년도약계좌”가 2022년 정기회 심의를 거쳐 신설·도입되었고, 법 개정 이후 정부와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2023년 6월부터 11개 은행²⁰⁾에서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됨.

청년도약계좌는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청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가능한 5년 만기의 자유적립형

18) 19세~34세 청년(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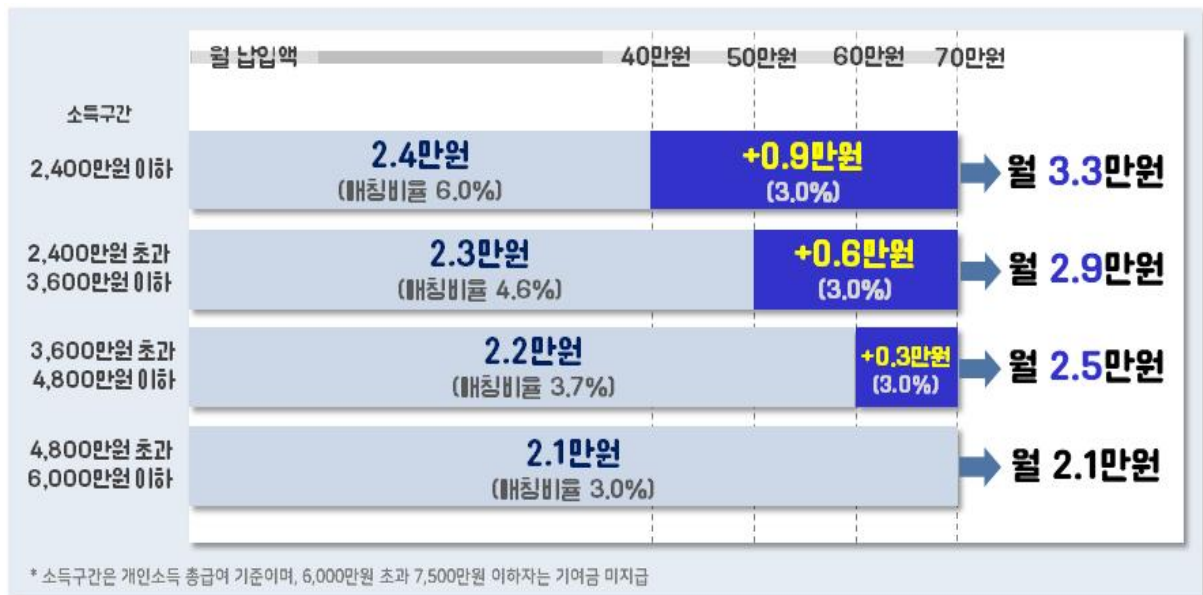
19)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청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가능했던 2년 만기의 정책금융상품으로 연 600만원 납입한도로, 청년희망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하였음.

20)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적금상품으로, 해당 계좌에 월 70만원을 한도(연 840만원)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의 지원금이 함께 적립되고,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정책금융상품임.

2024년 말 세법개정으로 청년도약계좌의 유지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였고, 2025년 1월부터는 정부기여금의 매칭한도를 확대하였음²¹⁾.

[월 70만 원 납입시 기여금 지급액 비교]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2024. 12. 27.

21) 개정 전에는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기여금 매칭한도까지만 기여금을 지원하였음.

개인소득		매칭한도	매칭비율	월 기여금 한도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2,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이하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이하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이하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이하	6,300만원 이하	-	-	-

참고로, 청년도약계좌의 조세지출은 2023년도 6월 최초 가입분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 아직 본격적인 지출²²⁾이 발생하지 않았고, 연도별 기여금 출연액은 2023년도 448억원, 2024년도 3,085억원, 2025년도 2,755억원 집행되었음.

[청년도약계좌 연도별 기여금 지급액]

(단위: 억원)

구분	2023	2024	2025. 8.
정부 출연액	447.8	3,084.8	2,755.2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²³⁾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청년도약계좌에 106만 명의 청년이 신규 가입하여 누적 157만 명이 가입하였는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가능한 청년이 약 600만 명(추정)인 점을 감안하면 청년 4명 중 1명 이상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2025년 8월 말 기준 가입인원(누적) 223만명 수준으로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저축상품으로 평가되고 있음.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수 및 납입액 현황]

(누적, 천명, 억원)

구분	2023	2024	2025. 8.
가입자 수	511	1,572	2,229
납입액	11,977	92,989	151,502

자료: 금융위원회

22) 해외이주, 혼인, 출산 등 특별사유에 의한 중도 해지시 일부 조세지출 발생

23) 금융위원회, '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보도자료. 2024. 12. 27.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청년의 경우 낮은 소득수준과 취업소요기간 등으로 인해 자산형성이 어려운 바, 사회 출발 시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이 필요함.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청년 세대의 경우 취업난으로 인하여 학교 졸업 후 첫 취업까지 평균 11.3개월이 소요되며, 초봉이 월 2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전체 중 53.5%로 나타나는 등²⁴⁾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둘째,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혜택과 정부지원금 지급은 소비성향이 높은 청년들에게 소비의 기회비용을 상승시킴으로써 저축 유인을 강화하여 저소득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수단으로서 제도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²⁵⁾.

□ 다만, 정부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의 신설을 추진 중으로, 상품목적, 가입대상 및 운영체계 등 중복적 측면²⁶⁾이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신규 가입은 ‘26년부터 중단하려는 계획임²⁷⁾.

따라서, 동 조세특례의 연장 여부는 새로이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

24) 통계청,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2025. 7.

25) 「청년도약계좌 개설 150만명 돌파, 가입유지율은 출시 15개월에도 88%의 높은 수준 유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10.31.)

26) 만 19~34세 일정소득 이하 청년층에 대한 정부의 적금형 자산형성 지원 상품

27) 다만, 청년도약계좌의 신규가입만 중단하는 것으로,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정부 기여금 지급 및 세제 혜택은 지속됨.

에 대한 조세특례 개정안²⁸⁾의 심사 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금융위원회²⁹⁾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은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긴 만기(5년), 정부 기여금(現 3~6%) 확대 필요성 등 개선 필요사항을 고려하여, 만기 3년 동안 납입한 금액의 6% 또는 12%를 정부 재원으로 지급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하였고,

연내 국회 예산심의, 세법 개정 등을 거쳐 재원규모·세제혜택 범위 등을 확정하고, 향후 상품 세부구조 설계,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참여은행 모집 등을 거쳐 '26.6월 경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상품을 준비할 계획이라는 설명임.

문 의 처
02)6788-5161

28) 정태호의원안 2025. 10. 28. 발의(의안번호 13762)

29) 금융위원회, “관계부처·기관이 협력하여 청년미래적금을 차질없이 출시하겠습니다.”, 2025. 9. 12.